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 △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학계·연구원·정부” 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 25~8.14)과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1.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안 제8조, 제12조)

○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적 생산방식과 업역 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장벽 해소

① 전문건설업체도 일반업종에 등록하여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시공계획·공사관리를 포함한 전체공사 시공가능

② 일반건설업체는 별도 법인으로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낭비 해소

○ 겸업허용에 따른 중소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반·전문간 상호 시장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연관성을 감안하여 제한된 기간과 범위내에서 상호 실적인정방안 마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에 반영)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다단계 하도급 개선, 노임착복 방지 (안 제31조의 2)

○ 입장, 장비대여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책임시공을 위하여 시공참여자로서 도급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도급계약이 편법적인 다단계·저가하도급 수단

법령과 고시

으로 악용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

☞ 시공참여자와 도급계약 근거조항을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의 관리하에 성과급 계약 등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3. 하수급인등 건설생산 참여주체에 대한 보호 강화

□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호강화 (안 제35조)

- 부도, 파산, 3자 합의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직접지급을 의무화하여 가압류 등으로부터 보호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보증서 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해지시 첨부토록 하여, 임의해지로 인한 하수급인 피해방지

□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 대금지급 보호 (안 제32조)

- 건설탁상 대금지급보호제도에 의하여 하수급인과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개선 (대금 미지급시 시정명령, 대금 직불규정 적용)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보·건설전문인력 육성추진

(안 제22조제5항, 안 제81조제5호, 안 제90조의2)

-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계약시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하도급과정에서 축소·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통하여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정산 근거도 마련

- 건교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기술인력+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육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전문인력 관련 건설사업자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대한 건설인력 관련 정보요청 근거명시

4. 건설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 보완

□ 유관기관간 건설부패 관련정보 공유 (안 제24조제4항, 제83조의2, 안 제85조의3제2항)

-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
-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무자격 건설업자 처벌 강화 등(안 제96조)

- 허위등록, 등록증대여, 영업정지처분 위반, 일괄하도급 등 무자격자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 무자격자의 건설업 영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현 행	⇒	개 정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불법 재하도급, 등록증대여 알선행위 처벌
(안 제21조, 제96조)

- 불법 재하도급,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했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다단계하도급과 불법행위 알선을 제재

□ 서면계약 미체결시 양벌규정 개선
(안 제99조제2호)

- 서면계약 미체결은 원수급인(갑)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하수급인(을)은 처벌에서 제외

5. 하도급계획서 제출·관리 제도화
(안 제31조의 2)

-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발주자는 사전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하도급정보망으로 관리 가능

- 건설법에 근거 마련후, 하도급계획서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

6. 그밖의 제도개선

□ 행정처분 절차 간소화(안 제8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이 확인되어 등록취소 처분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산업정보망 정보공유 대상기관 확대
(안 제86조)

- 건설관련 보증·보험·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건설업자의 보증·보험·공제사업 이용정보 요청 근거 마련



토막상식
십대 소년의 반항기
- 콜필드 신드롬

「구계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J. D. 샐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오는 구절이다. 청소년 문제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 '콜필드 신드롬'은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이름에서 나온 용어다.

그 소설에서 톱톡 내뿜듯이 던지는 콜필드의 어휘들이 십대들 사이에서 유행했었다.

마크 채프먼이 존 레논을 암살하던 순간 그의 손에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들려 있었다. 암살 동기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거짓과 가식에 대한 콜필드의 절규 때문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집에 돌아오기까지 며칠간 겪는 일들이 독백으로 진행되는데, 청소년기의 홀든 콜필드를 통해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꼬집고 있다. 주인공 콜필드는 냉소적인 반항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엘리아 카잔 감독이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지만 작가 샐린저는 ‘홀든이 싫어할까 봐 두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발표된 지 50년도 넘었지만 지금도 매해 30만 부 이상 팔린다는 「호밀밭의 파수꾼」. ‘콜필드 신드롬’은 전형적인 십대 소년의 반항기, 그 중에서도 사회에 냉소적인 십대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상처 입은 외로운 콜필드들은 우리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